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138
----------	------

발의연월일 : 2017. 7. 21.

발의자 : 송희경 · 성일종 · 유민봉
정갑윤 · 문진국 · 김승희
박인숙 · 김석기 · 나경원
정우택 · 박준영 · 송석준
민경욱 의원(13인)

제안이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소프트웨어시대로서 소프트웨어가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면서, 삶의 가치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있음. 특히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 기술간 융합 및 결합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산업을 견인하고 있음.

반면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2000년 전문개정되고 나서 그 동안 수정을 거듭해 왔지만 협소한 지원 범주로 인해 소프트웨어산업의 확장과 융합 등의 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음. 이에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실효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소프트웨어 자체의 진흥과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첫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서비스가 중소기업 등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하여 피해를 주고 있어 제도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둘째, 현재 전국적으로 19개 지역소프트웨어진흥기관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과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주요내용

- 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전략의 일환으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시장 침해여부를 사전 검증·평가하는 소프트웨어영향평가 제를 도입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 나. 지역소프트웨어 산업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소프트웨어진흥기관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함(안 제17조의2 신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소프트웨어영향평가제 도입) ① 정부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서비스가 민간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평가서(이하 “소프트웨어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영향평가서 항목은 파급효과 및 사업추진의 타당성, 민간시장의 유사 서비스 존재여부, 침해 가능성, 사업의 공공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프트웨어영향평가서의 대상사업은 소프트웨어 기획, 구축, 운영·유지보수, 정보화 정책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다.

④ 소프트웨어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소프트웨어진흥원의 설립) ① 소프트웨어 지역산업 육성과 지속성장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각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소프트웨어산업관련 인프라 구축과 효율적 관리 및 운영
2. 벤처기업육성 및 지역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관한
업무

3. 해외 진출을 위한 시장 개척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진흥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진흥원의 조직·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14조의2(소프트웨어 영향평가제 도입)</u>) ① 정부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려는 소프트웨어서비스가 민간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평가서(이하 “소프트웨어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소프트웨어영향평가서 항목은 파급효과 및 사업추진의 타당성, 민간시장의 유사 서비스 존재여부, 침해 가능성, 사업의 공공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소프트웨어영향평가서의 대상사업은 소프트웨어 기획, 구축, 운영·유지보수, 정보화정책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다.</p> <p>④ 소프트웨어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u><신설></u>	<p><u>제17조의2(소프트웨어 진흥원의 설립)</u>) ① 소프트웨어 지역산업 육성과 지속성장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진흥원</p>

(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각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소프트웨어산업관련 인프라 구축과 효율적 관리 및 운영

2. 벤처기업육성 및 지역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관한 업무

3. 해외 진출을 위한 시장 개척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진흥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진흥원의 조직·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